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93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9. 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9. 2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9. 1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사유

-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함(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
- 이에, 민원인으로부터 동해면 장기리 669-1번지지선 공유수면에 대하여 중간재 가공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이용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함으로써 동해면 장기지구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오니 심의의결을 요구함.

3. 제안경위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

4. 제안내용

-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 제시

5. 그간 추진사항

- 2005. 08. 05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경상남도에 진달
(민원인 : 창원시 팔용동 115-11번지 김태수)
- 2005. 08. 12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경상남도 → 고성군)
- 2005. 08. 19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관련 타실과 의견조회)

6. 관련근거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은 우리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지구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이 지구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군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는 마암면 보전리, 회화면 당항지구, 하일면 평촌지구 3개소임.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이 불가함.
- 당해지구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실과의 협의를 거쳤음.
-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토지이용계획, 매립 방법 및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음.
- 동해면 장기지구의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매립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매립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매립 이전보다 크게 얼마나 많이 창출되는지, 연안어촌계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자원보호구역 여부 등을 깊이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함.

8. 질의 및 답변 :

- 문 : 해당부서 검토의견이 누락된 부분은 무엇인가 ?
- 답 : 이 의견서는 공유수면매립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가의 의견서이며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매립면허 신청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문 : 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계획서 제출하고 또 매립면허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이해관계 등 이중 부담이 되지 않는가 ?
- 답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매립 대상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절차적 계획이며, 면허신청은 별개의 건입니다.
- 문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군에서 필요한 부분의 해면을 계획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지 않는가 ?
- 답 : 매 10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중간 필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번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 고성군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3개소가 있는데 동해면 장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것이며, 고성군에서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워 공장유치 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계획은 추진되어야 할 것임.

9. 토 론 : 없음

10. 심사결과

- 2005. 9.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